

# 무형자산 가치평가 기준 비교분석

2001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2001. 5. 19.

한남대 경상대학

- I. 서설
- II. 해외 가치평가기준
- III. 국내 제 법규
- IV.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
- V. 결언

이기호 ((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

설성수(한남대 경제과/하이테크비즈니스 학과 교수)

# I. 서설

## 1. 문제제기

우리나라에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중요성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대하고 있다. 특히 IMF위기는 실질적인 능력으로서의 기술 및 무형자산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국 등 선진자본주의 제 국가간 무역마찰의 주요 내용도 유형의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자국의 지적재산권보호를 포함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무형자산 및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마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무형자산가치평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2000년 7월 창립된 사단법인 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는 관련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을 2000년 12월 발표하고 기술 및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기준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이는 은행 및 공공평가기관, 투자관련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실행되던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관하여 통일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후 무형자산가치평가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무형자산에 관한 가치평가가 단순히 연구의 장이 아닌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통일된 기준으로서 확립될 수 있도록 국내외 관련기준 및 법령들을 검토하고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과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검토대상으로는 해외의 가치평가관련 기준으로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 Committee)의 국제가치평가기준(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 2000 및 미국의 국가 기준인 USPAP(United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을 분석하였다. 또 국내기준으로 기업회계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관련 제규정, 그리고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들을 검토하였다. 이 규정들과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에서 다루고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규정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의 의의 및 향후 발전방향을 밝히고자 한다.

## 2. 개념정리

본 논문의 주제인 무형자산 및 기술에 대한 관계 및 구분에 대하여는 여러 연구가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별도의 서술은 생략하고 설성수(2000) 논문<sup>1)</sup>에 나와 있는<sup>1)</sup>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였다. 이 논문에 따르면 기업의 자산은 크게 유형자산, 투자자산, 무형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무형자산은 기술형, 정보처리형, 엔지니어링형, 저작권형, 마케팅형, 인적자본형, 고객형, 계약형, 영업권형 및 위치형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확대된 기술의 정의<sup>2)</sup>를 적용하면 기술형, 정보처리형, 엔지니어링형, 저작권형, 마케팅형 및 인적자본형을 들 수 있다.

국내의 기업회계관련 제규정에 따르면 자산을 고정자산, 유동자산 및 기타자산으로 구분한다<sup>3)</sup>.

무형자산의 과목<sup>4)</sup>은 다음과 같다.

1. 합병·영업양수 및 전세권 등에 의해 유상으로 취득한 영업권
2.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등을 포괄하는 산업재산권
3. 광업권
4. 어업권
5. 차지권
6. 발기인의 보수, 인수수수료, 설립등기비, 주식발행비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 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을 포함한 창업비
7.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으로서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서의 개발비
8. 기타의 무형자산.

---

1) 설성수, “기술가치의 개념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3권 2호, 2000. 7., 4~5 쪽.  
2) 상기논문에 따르면 (설성수, 2000)에 따르면 기술은 우리의 문명전체이기에 숫자도 많고 형태도 매우 다양하다. 먼저 기계설비와 같은 유형기술(H/W)과 설계도면과 같은 부호형 기술(S/W)이 있고, 또한 노하우나 영업비밀과 같은 무형의 형태도 있다. 아울러 저작권이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지적자산(Wet Ware)도 기술의 범주에서 언급 될 수 있다.  
3) 기업예산회계법 제12조  
4) 기업회계기준 제20조

미국 USPAP의 기준에 따르면, 무형자산(Intangible Asset)은 프랜차이즈, 상표, 특허, 저작권, 영업권, 주권(equity), 광업권, 증권(security), 그리고 계약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인 자산과 구분되는 것을 모든 것을 이른다. 또 비즈니스(Business Equity)에는 주식(capital stocks), 파트너십 지분(interests), 협력권, 독점권, 옵션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기업 또는 기업의 일부분의 소유권에서 파생하는 지분(interests), 이익(benefits), 권리를 통칭한다. 여기서 보듯이 무형자산은 비즈니스의 일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상호간에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USPAP에서는 비즈니스와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나누지 않고 하나의 기준항목으로 함께 다루고 있다<sup>5)</sup>.

## II. 해외가치평가기준에 대한 검토

### 1. IVS 2000

#### 1) 구성

1970년대 이후 국제적인 투자가 급격히 증대됨에 따라, 각 국의 가치평가기관 사이의 규정차이로 인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가치평가기준위원회(IVSC: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가 설립되었다<sup>6)</sup>. 이 기구에는 현재 52개 기관이<sup>7)</sup> 참여하고 있다. 이 기구는 공익을 위한 재산권 가치평가기준의 고안 및 제정, 동 기준의 세계적인 보급촉진, 제 국가기준들간의 적용상의 차이를 식별하고 공시하는 것을 주요한 설립 목적으로 한다.

IVSC는 1985년, 1994/97년, 2000년에 국제가치평가기준(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을 재개정 하였다. 주요한 목적은 첫째, 재무보고의 투명성을 위하고 둘째,

5) USPAP Standards 9 and 10, 2000 National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Course : Student Manual, ASA, 2000. 7.

6) IVSC는 1981년 국제자산가치평가기준위원회(The International Assets Valuation Standards Committee)로 출범하여 1994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7) 35개 국가협회 및 11개국 참관인단체, 그리고 3개국 주재원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전세계 가치평가사를 위한 전문적인 기준이나 지침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신흥산업국 및 개발도상국에 적합한 가치평가기준 및 재무보고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국제가치평가기준2000의 구성은 머리말, 일반적 가치평가 개념 및 원칙, 평가사의 윤리적 규범을 제시하는 가치평가규범, 부동산, 동산, 비즈니스, 금융지분 등의 네가지 재산권 유형, 시장가치 및 비시장가치기준으로 이루어진 가치기준의 차이를 논의하는 가치유형, 시장가치기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 및 비시장가치기반의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국제가치평가기준, 재무보고목적 및 대출목적의 가치평가 적용원칙으로 구성된 국제가치평가적용원칙, 8개의 세부적인 지침, 주식, 그리고 용어집<sup>8)</sup>으로 구성되어있다.

## 2) IVS2000에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IVS2000에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는 상위의 기준인 국제가치평가기준 및 국제가치평가적용원칙을 따라야 하며,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는 토지 등 유형자산의 가치평가와는 별개의 지침으로서 다루고 있다<sup>9)</sup>. 또 지침6의 기업가치평가지침에서는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것을 기업가치평가의 주요한 요소로 포함하고 있다. IVS2000에서 다루고 있는 무형자산에는 영업권, 다양한 법적권리, 특허권, 실용신안권, 저작권, 프랜차이즈, 계약중서 등이며,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는 국제가치평가기준에서 논의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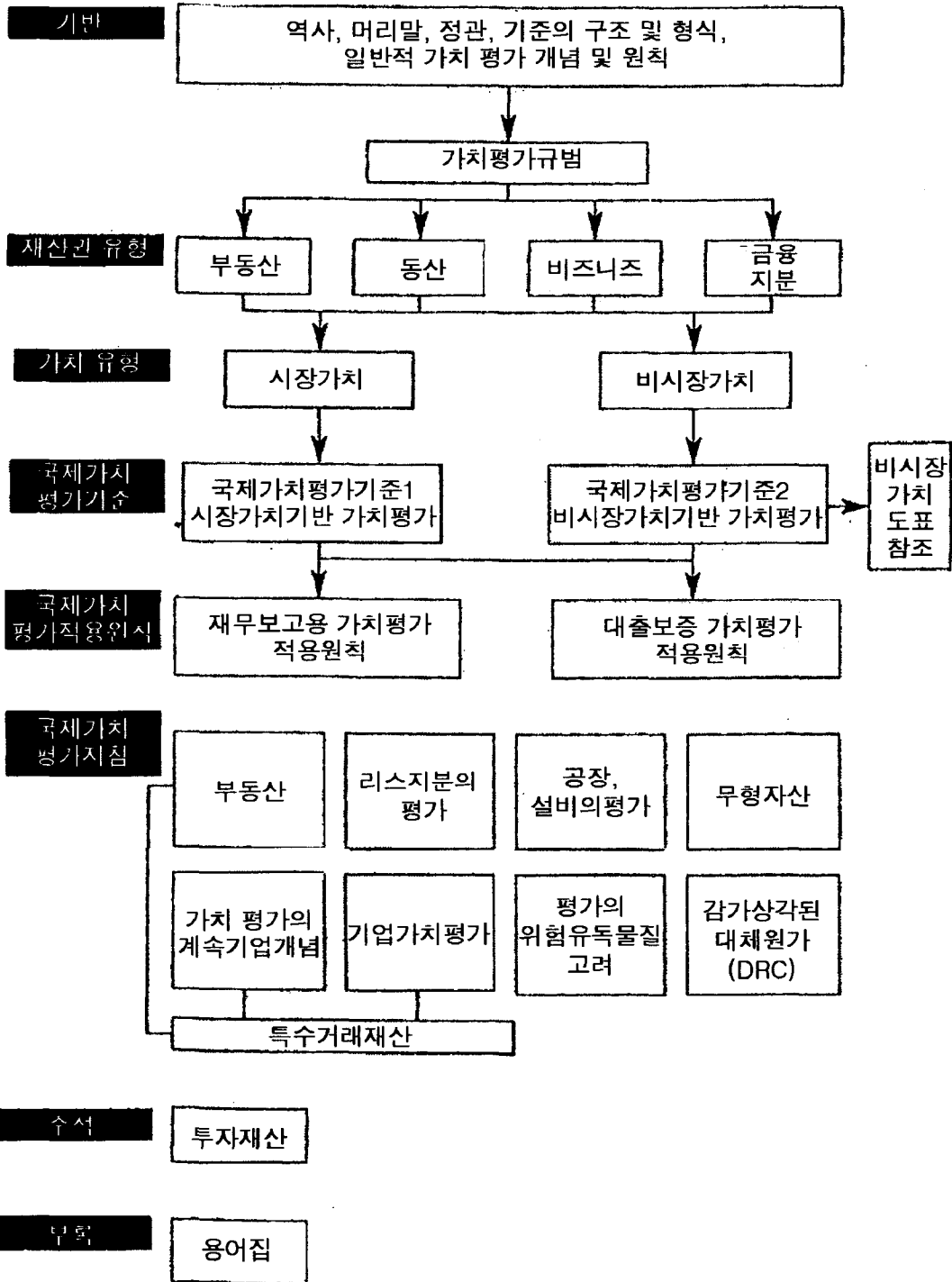
IVS 2000에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의 용도는 기업 또는 그 일부의 취득 및 처분, 합병, 무형자산의 매각 등이다. 또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서 고려할 사항으로는

- 소유지분에 부수된 권리, 특권 또는 조건
- 무형자산의 잔존 경제적 수명 및 법률적 수명
- 무형자산의 수익력
- 무형자산의 성질 및 무형자산의 역사
- 정치전망 및 정부정책을 포함한 대상 무형재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제전망. 환율, 물가상승률, 이자율과 같은 요인
- 대상 무형자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산업의 여건 및 전망
- 무형자산가치는 “영업권”이라고 칭해지는 무차별자산에 포함되어질 수있고
- 대상 무형자산 소유 지분권의 이전 거래

---

8) IVS2000의 구조

- 다른 시장자료, 즉 대체투자의 수익률 등
- 유사한 무형자산 지분 또는 무형자산의 취득시의 시장가격
- 무형자산의 경제적 역량 및 전망을 추정하기 위한 역사적 재무제표의 조정



9) 국제가치평가지침4

- 가치평가가 적절하다고 믿는 기타 정보 등을 들고 있다.

IVS 2000에서의 무형자산가치평가 지침에 따르면 평가방법은 일반적인 비용접근법, 소득접근법, 시장사례접근법 등이 모두 적용된다. 이 지침에서 특이한 것은 소득접근법을 사용할 때 추정된 소득은 일반적으로 모든 무형자산에 배분하여 평가하여야 한다<sup>10)</sup>.

IVS2000에서의 무형자산의 가치평가에 대한 특징은 기본적인 가치평가기준 및 적용원칙을 준수하면서, 그 구체적인 평가지침을 기존 유형자산의 가치평가와 별도로 취급하며, 기업가치평가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분리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유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에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 및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추가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무형자산 및 기업가치평가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 2. USPAP

### 1) 구성

USPAP(United Standard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은 1987년 설립된 감정평가재단(Appraisal Foundation)의 감정평가위원회(Appraisal Standard Boards)에 의해 제정되고 미 의회에 의해 승인되어 국가기준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또 1989년 FIPREA법에 의해 국가적으로 인정되고, 1993년 예산실(OMB)에서 승인되었으며 두 차례에 걸쳐 수정되어, 현재 2000년 1월 1일판이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 USPAP의 주요한 목적은 전문평가사의 분석, 의견, 결론을 발전시키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그것이 의미 있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데 있다고 규정한다.

USPAP의 구성은 서문 및 행위규범<sup>11)</sup>으로 구성된 개요와 10개의 기준, 8개의 진술, 18개의 적용의견, 및 용어집<sup>12)</sup>으로 되어 있다.

10) 다만 개별자산에 배분된 소득이 모든 자산소득의 합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윤리규정, 능력규정, 이탈규정, 보완적 기준규정

12) Table of Contents

Preamble / Ethic Rule / Competency Rule / Departure Rule / Jurisdictional

## 2) USPAP에서의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USPAP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비즈니스 가치평가<sup>13)</sup>와 함께 다루고 있다. (기준 9 및 기준 10)

특히 기준규정 9-2에서는 비즈니스나 무형자산 평가에 있어서 평가사가 식별해야하는 내용으로

- a. 고객이나 의도된 사용자 혹은 평가결과의 의도된 사용자
  - b. 임무의 목적이나 사용될 가치개념
  - c. 유효일자
  - d. 평가될 비즈니스, 자산이나 주식의 매매계약, 주식이용 제한, 파트너쉽 조항이나 통제권 등
  - e. 작업범위
  - f. 특별한 가정
  - g. 가상조건
- 등을 들고 있다.

기준규정 9-3에서는 비즈니스나 무형자산 평가에 있어서 평가사는 기업의 전부나 부분 청산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가능성을 조사

---

Exception Rule / Supplemental Standard Rule  
Standard and Standard Rule  
S1. : Real Property Appraisal, Development  
S2. : Real Property Appraisal, Reporting  
S3. : Real Property and Personal Property Appraisal Review, Development and Reporting  
S4. : Real Property/Real Estate Consulting, Development  
S5. : Real Property/Real Estate Consulting, Reporting  
S6. : Mass Appraisal, Developing and Reporting  
S7. : Personal Property Appraisal, Developing  
S8. : Personal Property Appraisal, Reporting  
S9. : Business Appraisal, Developing  
S10. : Business Appraisal, Reporting  
Statement on Appraisal Standards : SMT-1 ~ SMT-9  
Advisory Opinions : AO-1 ~ AO-19

### 13) Standard 9, Business Appraisal, developing

"In developing a business or intangible asset appraisal, an appraiser must identify the problem to be solved and the scope of work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and correctly complete the research and analysis steps necessary to produce a credible appraisal."



해야만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준규정 9-4에서는 특히

- 비즈니스의 성격과 역사
- 기업, 그 산업, 경제에 영향을 주는 금융, 경제조건
- 기업의 과거 및 현재 실적 및 전망
- 주식이나 지분의 과거 거래
- 유사 비즈니스의 거래
- 유사한 비즈니스에 대한 가격 조건
- 무형자산의 경제적 이득

등의 내용을 분석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USPAP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비즈니스가치평가의 하나로서 다루고 특히 비즈니스 가치평가사를 무형자산가치평가사와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기업가치평가의 부분 속에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고 기업가치평가와 무형자산가치평가를 병기한 것에 특징이 있다<sup>14)</sup>.

### III. 국내제법규에서의 무형자산의 위치

#### 1. 기업회계관련 규정

국내에서 무형자산에 관하여 규정된 가장 일반적인 규정은 기업회계와 관련한 기업예산회계법, 기업회계기준, 그리고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sup>15)</sup>.

무형자산의 표시 및 평가<sup>16)</sup>는 무형자산의 취득원가,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에서 그 상각액을 직접 차감한 잔액으로 기재한다. 다만 그 수명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

14) 비즈니스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세한 구분은 본 논문 서설 참조.

15) 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논문 서설 참조.

16) 기업회계기준 제21조 및 63조, 상장법인 등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정.

나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20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 2. 감정평가규칙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의 부속규정인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무형자산의 평가에 관하여 제28조(어업권의 평가) 및 제29조(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에 규정하고 있다.

어업권의 평가는 어장 전체에 대한 수익환원법에 의하여 평가된 가액에서 당해 사업의 적정규모에 해당하는 시설소요액을 공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수익환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 또는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전용특許이용권, 기타 무형고정자산의 평가는 영업권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행하거나 영업권의 평가에 포함하여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가 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비준가격으로, 양도가 불가능한 가입전화사용권의 평가는 신규취득가격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최근에 개정이 공고된 감정평가규칙(안)에서는 별도의 기업가치평가규정을 삽입하고 있다.

## 3. 기타 상법 및 세법에서의 무형자산

상법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에서는 무형자산을 취득가액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제457의 2(연구개발비의 계상)에서는 연구개발에 소요된 비용으로 상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sup>17)</sup>

---

17) 상법 제452조(자산의 평가방법) 회사의 회계장부에 기재될 자산 중 영업권은 유상으로 승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가액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영업권을 취득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제457조의2 (연구개발비의 계상) ① 신제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과 관련하여 특별히 발생한 비용은 대차대조표 자산의 부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계상금액은 그 지출 후 5년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이상의 상각을 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0조의4(과세가격의 결정원칙)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중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대통령령<sup>18)</sup>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이연자산의 평가)에서는 이연개발비에 들어가는 항목의 하나로 연구개발비<sup>19)</sup>를 포함하며, 그 평가방법에는 창업비·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1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및 제59조(무체재산권 등의 평가)에서는 특이하게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의장권 및 저작권 등의 가액은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sup>20)</sup>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sup>21)</sup>라고 규정한다. 또 최종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하며 최종경과연수는 20년을 넘을 수 없다. 또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최근 3년간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2인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당해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관련 기준 및 제반 법령에서는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취득원가로 간주하고, 적정한 감가상각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정평가규칙 및 상속세법에서만 무형자산의 가치평가를 최종 경과년수까지의 수익을 평가시점에서의 가액으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회계관련 규정은 보수주의 원칙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세금을 거두기 위한 상속세법에서는

18) 관세법시행령 제4절(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에서는 금액의 산정을 위한 제반 서류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19) 신제품·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0) 100분의 10

21) 각 연도의 수입금액

$$\left(1 + \frac{10}{100}\right)^n$$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미래소득에 관하여 가장 적극적인 평가방법을 채택함을 보여준다.

#### IV.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에서의 무형자산

##### 1.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의 구조

2000년 7월 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의 제안에 의해 구성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위원회에서 제정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은 무형자산 및 기업에 대한 사회적인 가치평가기준이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제적인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이는 기존의 기업회계관련 제규정 및 지가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규정이 유형자산의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과 차이가 난다. 또한 기업가치평가와 관련된 일부 사항이 유가증권관련 제 규정에서 부분적으로 규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및 기술에 기반한 기업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맞춘 기준이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중요 가치평가 과제인 무형자산에 대한 내용을 담은 가치평가기준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그 구조는 아래 표와 같다.

머리말	
행위규범	
기준	가치평가기준 가치평가보고기준
준칙	기업가치평가준칙 벤처기업가치평가준칙 기술가치평가준칙
절차지침	기업가치평가절차지침 기술가치평가절차지침 위험·위해물질처리지침 계산소프트웨어처리지침 전자문서처리지침

<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

행위규범 및 보고기준, 가치평가기준은 가치평가 시 꼭 준수되어야 하는 기준이며, 준칙은 기준을 준수하는 속에서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절차지침은 초기의 기준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설명적인 내용이며, 처리지침은 모든 평가에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이다.

## 2.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에서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은 머리말 1.2와 1.5에 나와 있듯이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가 무형자산 및 기술가치평가, 그리고 기업가치평가에 주목하고 있다. 또 그 주요한 문제제기의 하나도 우리나라에 기술자체나 기술기업 혹은 일반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의 기준이 없어 사회적인 혼란이 되는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출발한다. 또 기업가치평가의 주요한 요소가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치창출의 기반으로서의 기술 또는 무형자산의 평가임을 지적하고 있다.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에서 구체적인 적용원칙으로서의 준칙은 기업가치평가준칙 및 벤처기업가치평가준칙, 그리고 기술가치평가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준칙의 차이는 기업가치평가준칙은 단위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위한 것으로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지표들이 존재하고, 아울러 기업이 어느 정도의 업력을 갖추어 기존의 재무제표상의 수치들이 의미를 갖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즉 시장사례접근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비교 가능한 유사기업과 주식가격이나 거래가격 등을 비교 조정할 수 있고, 소득접근법에서도 과거의 결과로부터 미래의 수익과 비용이 추정 가능한 기업에 적용된다. 또 무형자산의 비중이 낮은 비즈니스, 매출예상이 어렵거나 매출이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는 자산기반접근법이 적용된다.

벤처기업가치평가준칙은 벤처기업이나 기술 의존적인 사업의 가치평가를 위한 것으로 성숙된 기업과는 달리 자산도 많지 않고 기업조직도 충분히 구비되지 않아

기술력과 사업성 중심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위험성이 많은 기업에 대한 평가준칙이다. 또 그 평가에 있어서는 업종 및 성숙도에 따른 큰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하며, 이는 할인율이나 할인 및 위험척도의 형태로 가치평가에 반영된다. 또 평가의 중요한 요소인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과 경영역량 등의 무형의 자산이 가치평가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 심지어는 자금조달에 대한 검토도 중요한 평가요소의 하나이다. 그 평가방법론으로는 벤처기업은 그 속성상 유형의 자산이 크지 않으므로 자산접근법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권장되지 않으며, 미래소득의 추정을 통한 소득접근법이 권장되고, 유사한 거래의 사례가 있는 경우 시장사례 접근법도 선택 가능하다.

기술가치평가준칙은 개별적이고 분리 가능한 기술의 평가를 위한 것이다. 또 중요한 평가요소는 벤처 또는 기업가치평가에서 주요 요소인 경영역량 및 재무제표 분석을 제외하고 기술성, 시장성, 수익성을 들고 있다. 특히 기술에 있어서도 기술의 존재형태 즉 기술의 독립성, 유형, 존재형태 등에 따라 가치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방법론이 달라진다.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에도 대상 기술이 시장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되는 것을 가정하는 경우에만 가치평가가 가능하며, 벤처기업가치평가와는 달리 기업구성, 기술의 완성도, 그리고 사업적인 위험이 평가의 요소로 추가된다. 주요 평가방법론으로서는 소득접근법과 시장사례접근법을 들 수 있으며 비용접근법은 별로 권장되지 않는다. 또 기술이 직면한 불확실성이 커서 전략적인 선택의 가변성이 큰 경우는 옵션가치평가법을 사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은 유형자산보다는 무형자산, 특히 기술과 같은 미래 소득창출의 원천에 초점을 둔 가치평가기준이다. 또 각각의 기업가치평가기준, 벤처기업가치평가기준, 기술가치평가기준 등은 각 기업의 성숙도에 따라 적용 가능한 평가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기술 등의 무형자산이 점하는 위치에 따른 평가기준으로 볼 수도 있다.

## V. 결론

위의 사례들에서 보였듯이 해외 가치평가기준은 토지등 유형의 가치평가로부터 무형자산의 가치평가 그리고 무형의 비즈니스 가치평가를 포함하는 형태로 발전

함을 볼 수 있다. 또 국내의 경우에도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형자산중심의 기업회계 또는 법 위주로 되어 있으며, 현재는 무형자산의 미래소득효과를 평가하려는 시도들이 몇몇 규정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기업회계상의 무형자산평가는 취득원가에서 제반비용을 더하고 이의 감가상각을 제하는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어, 기업의 정확한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사)한국기술가치평가협회가 중심이 되어 발표한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은 무형자산과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보수적인 회계개념으로 볼 때 대단히 획기적인 일이며, 기업 및 기술을 위한 가치평가를 위한 새로운 시도로서 큰 의미를 갖는다. 또 기술의 등급평가를 위한 지표나열이 아닌,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고, 기업 또는 기술의 성숙도에 따른 적절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기업 및 무형자산가치평가에 큰 전환점이 되고 있다.

이는 금융 및 투자시장이 무형자산 중심의 기업가치평가를 요구하는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또 민간의 관련평가기관 및 전문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경이적인 일이다. 다만 아직 그 구체적인 적용지침과 사례 및 해석들이 풍부하지 못하므로 이후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 내용을 풍부히 하고 사례 및 해석을 추가한다면 사회적으로 큰 공헌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 참고문헌

- 설성수외,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2000」, 기술기업가치평가기준위원회, 경문사, 2000.
- 설성수, “기술가치평가의 분석틀”, 「기술혁신학회지」, 3권1호, 2000. 3.
- 이병민, 이기호, “기술가치평가사의 기능 및 역할”, 「기술혁신학회지」, 3권2호, 2000. 2.
- 설성수, “기술가치평가의 개념적 분석”, 「기술혁신학회지」, 3권2호, 2000. 7.
- 이명택, 이기호, “특허의 기술가치평가사례”, 기술혁신학회 2000 봄 학술대회논문, 2000. 5. 27.
- American Society of Appraisers, *2000 National Uniform Standards of Professional Appraisal Practice (USPAP) Course : Student Manual*, 2000.
-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 Committed, *International Valuation Standard 2000*, 2000.
- Reilly, Robert F., Robert P. Schweihs, *Valuing Intangible Asset*, McGraw-Hill, 1999.